



대한민국 강화군과 태국 뽉끄렛군과의 교육 및 문화 교류 관련 양해각서

교육 및 문화 교류와 관련된 본 양해각서는 2025년 9월 11일에 체결되어 발효하는 것으로서, 그 양측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를 그 주소지로 하며 강화군수를 대리인으로 하는 **강화군** 및

(2) 태국 논타부리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1, Chaeng Watthana Road, Pakkret Sub-district, Pakkret District, Nonthaburi Province를 그 주소지로 하며 뽉끄렛군수를 대리인으로 하는 **뽉끄렛군**

강화군과 뽉끄렛군을 통칭하여 '양측' 또는 '양자'라 호칭한다.

우호 관계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양측은 다음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교육 및 문화 교류에 관한 본 양해각서의 작성에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동 양해각서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양측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측은 각자에게 적용될 법령, 규칙, 규정, 국가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2. 협력의 범위

본 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다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1 양측은 각자의 재량이 허락하고 각자가 속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이 허락하는 한 상대방과 협력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류를 추진한다.

2.2 양측은 교육과 문화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킬 지식 교류를 추진한다.

2.3 양측은 교육과 문화의 지속적인 교류라는 목표하에 아이디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3. 조항

3.1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여 5(오)년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양측의 동의에 의해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으며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2 본 양해각서는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통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본 양해각서의 내용에 포함된다.

3.3 양측 가운데 본 양해각서의 시행을 사유 없이 종료하고자 하는 쪽의 당사자는 종료를 희망하는 날짜보다 30일 이전에 본 양해각서의 종료와 관련된 서면 통지를 상대방 측에 전달하여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종료일 이전에 양측이 승인하여 진행 중인 활동 및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 조항과 같이, 2025년 9월 11일, 강화군청에서 체결된 본 양해각서를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진본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양측은 상기 명시된 날짜로부터 권한을 갖춘 대리인이 본 양해각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본 양해각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체에 이견에서는 영어본의 해석이 사용된다.

강화군

대한민국

백고렛군

태국



박용철
(Yong-Chul Park)

강화군수



비차이 반다삭
(Vichai Bandasak)

백고렛군수